

	보 도 자 료	
	배포 시부터 보도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,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	
책 임 자	금융위 김연준 팀장(02-2156-9680)	담 당 자	김정주 사무관(02-2156-9682)
	금감원 최성일 국장(02-3145-8300)		이근우 팀 장(02-3145-8011)
배 포 일	2015.12.22.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8매

제목 : 「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」 시행, 연계영업과 해외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됩니다.

- ◆ 「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」에 따른 시행령(12.22), 감독규정(12.16) 개정 완료
- ① 은행의 **One-stop연계대출** ⇒ 5개 지주, '16.상반기 시행
 - ② 그룹내 **Two-Bank** 지점망 공동활용 및 **교차서비스** (입금지급, 환전, 증명서 발급 등) ⇒ "부산·경남은행 / 광주·전북은행"은 '16.1월부터 서비스 제공
 - ③ **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법인 신설 확대** ⇒ ('15) 46개 → ('16^e) 52개 → ('17^e) 58개, +12개(동남아 8개 등)
 - ④ **복합점포 대폭 확대**: ('15) 90개 → ('16^e) 126개 → ('17^e) 135개, +45개
* 다만, 보험복합점포는 既 발표('15.7.3) 방침에 따라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에서 유지

- I. 개 요**
- 금융위원회(위원장: 임종룡)는 **금융개혁**의 일환으로 「**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**」 ('15.6.22)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
 - 금융위는 **시행령(12.22. 국무회의 통과)·감독규정(12.16. 금융위 의결) 개정을 완료**하여 **12.29일부터** 이를 시행할 계획이며,
 - **금융지주그룹**은 금융서비스 개선, 그룹 시너지 제고, 新수익원 발굴을 위한 **금융혁신을 활발히 추진 중**

II. 제도개선 내용 ※ 1.~4. 관련 상세내용 '15.6.22일 보도자료 참조

1. 경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

가. 업무위탁 규제 대폭 완화

-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“**예외적 허용***”에서 “**원칙적 허용**”으로 대폭 완화
* (종전) 59개 본질적 금융업무 중 채권추심 등 8개만 위탁 허용 업무

- 내부통제, 위험관리,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 **외에 업무위탁 전면 허용** (신용위험 분석·평가 업무도 위탁가능)

- 업무위탁 승인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위탁절차를 간소화
 - 심사·승인을 제외한 대출, 카드, 할부·리스 등 **각종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신청 및 서류접수, 채권추심, 그룹 내 Two Bank간 입금·지급, 계좌이체** 등을 위탁보고로 운영

나. 미등기임원 및 직원 겸직 규제 완화

-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**미등기임원**에 대해 **등기임원과 동일한 폭 넓은 겸직 허용**

- 대부분 업무가 겸직 금지된 **직원의 경우** 심사·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**후선업무, 비핵심업무***의 자회사등간 겸직을 허용
* 금융상품(대출, 카드, 할부·리스 등) 신청접수 및 판매, 신용위험 분석·평가 등

- **금융지주-자회사등간 겸직**은 사전승인에서 **사전보고로 전환**
* 지주와 복수 자회사등에서 위험관리·내부통제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만 승인으로 운영

<겸직업무 규제 개선 비교>

구 분	종 전	개 선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2">임원</td> <td>등기</td> <td rowspan="2">→</td> <td rowspan="2">대부분 겸직허용</td> <td rowspan="2">→</td> <td>대부분 겸직허용</td> </tr> <tr> <td>미등기</td> <td>대부분 겸직허용</td> </tr> </table>	임원	등기	→	대부분 겸직허용	→	대부분 겸직허용	미등기	대부분 겸직허용	<table border="1"> <tr> <td>대부분 겸직허용</td> <td rowspan="2">→</td> <td>대부분 겸직허용</td> </tr> <tr> <td>59개 중 51개 업무 겸직금지</td> <td>13개 업무 및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만 겸직금지</td> </tr> </table>	대부분 겸직허용	→	대부분 겸직허용	59개 중 51개 업무 겸직금지	13개 업무 및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만 겸직금지	<table border="1"> <tr> <td>대부분 겸직허용</td> <td rowspan="2">→</td> <td>대부분 겸직허용</td> </tr> <tr> <td>59개 중 51개 업무 겸직금지</td> <td>13개 업무 및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만 겸직금지</td> </tr> </table>	대부분 겸직허용	→	대부분 겸직허용	59개 중 51개 업무 겸직금지	13개 업무 및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만 겸직금지
임원		등기				→	대부분 겸직허용	→	대부분 겸직허용											
	미등기	대부분 겸직허용																		
대부분 겸직허용	→	대부분 겸직허용																		
59개 중 51개 업무 겸직금지		13개 업무 및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만 겸직금지																		
대부분 겸직허용	→	대부분 겸직허용																		
59개 중 51개 업무 겸직금지		13개 업무 및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만 겸직금지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영업담당 직원</td> <td rowspan="2">→</td> <td>겸직금지</td> </tr> <tr> <td>신용평가, 위험관리, 내부통제 담당 직원</td> <td>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</td> </tr> </table>	영업담당 직원	→	겸직금지	신용평가, 위험관리, 내부통제 담당 직원	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겸직금지</td> <td rowspan="2">→</td> <td>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</td> </tr> <tr> <td>신용평가, 위험관리, 내부통제 담당 직원</td> <td>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</td> </tr> </table>	겸직금지	→	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	신용평가, 위험관리, 내부통제 담당 직원	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겸직금지</td> <td rowspan="2">→</td> <td>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</td> </tr> <tr> <td>신용평가, 위험관리, 내부통제 담당 직원</td> <td>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</td> </tr> </table>	겸직금지	→	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	신용평가, 위험관리, 내부통제 담당 직원	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			
영업담당 직원	→		겸직금지																	
신용평가, 위험관리, 내부통제 담당 직원		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																		
겸직금지	→	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																		
신용평가, 위험관리, 내부통제 담당 직원		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																		
겸직금지	→	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																		
신용평가, 위험관리, 내부통제 담당 직원		겸직 허용 (단, 금융지주 겸직 필요)																		

2 정보 공유 관련 규제 합리화

- 계열사간 1개월 내 정보공유 및 '법규·국제기준 준수, 위험관리' 목적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*로 사전통제 완화
 - * 다만, 이용기간, 이용목적, 정보공유 범위 등의 타당성을 매분기 사후 점검
- 고객이 본인 정보의 계열사간 공유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(최근 3년간 내역)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강화
 - *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조회한 고객이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오발송에 따른 피해를 방지
-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우편, 전자우편 외에 문자메시지* 추가
 - * 다만, 문자메시지에 "고객정보 제공사실 및 홈페이지 조회서비스 이용가능함을 고지"해야함
 - 既 통보한 정보의 "정확성·최신성" 유지를 위한 고객정보* 제공인 경우 최초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 면제
 - * 예: 신용평가를 위한 정기적 고객정보 최신화, 우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래실적 취합 등

3 해외시장 진출 지원

- 자회사 등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시 담보(대출액의 100% 이상)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
 - 담보력이 부족한 신설 해외법인이 계열사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도록 하되 신용공여 한도규제*는 유지하여 위험전이 차단
 - * (개별한도) 신용공여하는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% / (합산한도) 20%
-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(국내 계열사 포함)에 대해 '보증'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*가 가능함을 명확화
 - * 대출, 지급보증, 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·간접적 거래
→ 다만, 보증은 남발 방지를 위해 보증실적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위험을 관리
- 국내·외 계열사 직원의 해외 법인에 대한 임직원 겸직 제한을 폐지하고 겸직 사전승인* 절차를 폐지
 - * 해외 진출국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적격성 심사(Fit & proper test)로 일원화

4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지원

-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들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의 범위*를 핀테크(Fintech),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·실물융합업종으로 대폭 확대
 - * (중전) 금융밀접업종의 구체적 범위가 제시되지 않아 투자가능 여부가 불명확(개선) 핀테크 회사, 부동산·선박·해외자원 등에 투자하는 회사형 펀드 등
-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이나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지분을 규제*를 적용받게 되어 펀드운용이 제약되므로 자회사등에서 제외(지분을 규제 배제)하여 투자기구 운용을 지원
 - * (중전) 자회사등에 대해 최소 50%(상장 30%)이상의 지분보유를 보유해야 함
→ 펀드 특성상 잦은 청약환매로 지분을 규제준수가 어려워 펀드운영 자체가 곤란

5 기타 규제 합리화 사항

※ ②~④는 현장점검반 건의과제

- ① 금융지주는 영업관련 인적·물적설비 요건이 없어 예비인가 실익이 없는 만큼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
- ② 자회사 편입 신고시 제출서류를 필요 서류만으로 간소화
 - * 금융지주회사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, 예상수지계산서 등 8개 제출서류 폐지
- ③ 금융지주 소속 자회사간 단기 자금예치 등*이 금융지주법령상 신용공여로 분류됨에 따라 담보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법령상 규제대상이 아닌 신용공여는 담보관련 규제를 면제
 - *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계열 은행에 대한 단기 예치금, 자산운용을 위한 펀드 예치금 등이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정되어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확보해야 함
- ④ 금융지주 계열사간 업무위탁시 관련 규정별*로 건건이 보고하던 것을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(안 §19-2⑦)
 - *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규정」, 「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」 등
- ⑤ 금융지주회사가 소속 회사 금융상품 개발·판매를 위한 "기획·조사·분석"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

III. 기대효과

- ◆ 금융지주그룹은 「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」에 발 맞추어
 - ① 연계영업, One-stop서비스 강화, ② 해외 진출 및 신성장 동력 발굴,
 - ③ 그룹 경영효율성 제고를 추진 중

☞ 수익 다변화, 금융지주 본연의 시너지 효과 강화 기대

※ 국제신용평가사 Moody's도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이 금융지주그룹의 수익성, 영업효율, 통합 위험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

[Moody's Credit Outlook('15.7)]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의 용이성, 인력운용의 융통성 확대로 지주그룹의 영업효율성이 강화되고, 캐피탈사, 저축은행 등이 은행의 위험관리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통합 위험관리에도 긍정적 효과

1 One-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

①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, 캐피탈과 연계한 One-stop 대출서비스* 제공

* 저축은행·캐피탈 대출상품 소개 → 금리·한도 가조회 → 대출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전산 전송 → 저축은행·캐피탈사 최종 심사·승인 후 대출액 송금(고객 無방문)

5개 은행지주*는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·캐피탈 대출 상품의 단순 소개에서 벗어나 '16년 상반기 중 One-stop 연계대출 서비스 시행을 추진

* (신한하나) 현행 연계대출 시스템 확대 / (NH, KB, BNK) 신규 서비스 시행

⇒ (제2금융권 계열사) 대출모집비용 절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비교적 우수한 고객 유치 가능

⇒ (고객) 금융사기 노출 위험 감소, 대출 탐색비용 절감, 사금융 피해방지 등

② 은행의 계열사 상품 위탁판매로 One-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

○ 대출, 카드, 보험(방카), 할부, 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, 자산관리, 금융투자 관련 종합서비스 등은 복합점포에서 일괄처리 가능

- 특히, 복합점포 확대('15년 90개 → '17년 135개, +45개), 스마트점포* 확산 추세로 연계영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

* 바이오인증 등 비대면 본인확인을 거쳐 계좌개설, 카드발급,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ATM(Kiosk) 보급, 모바일을 활용한 無방문 금융서비스 제공 등

<은행판매망을 통한 One-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>



※ 보험복합점포는 既 발표('15.7.3) 방침에 따라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에서 유지

#1 B지주는 고객자산가 대상의 자산관리형(WM) 복합점포 외에 테크노밸리, 공단 소재 기업대상으로 기업대출, IPO, 채권 인수·주선, M&A 등 기업 금융(CIB) 특화 복합점포('15년 5개)를 확대 개설할 계획

#2 C지주 소속 은행은 계열 캐피탈사의 할부·리스상품 위탁판매를 준비 중

③ 그룹내 Two Bank 지점망을 공동활용하여 입금·지급, 환전, 증명서 발급, 대출 등 상품계약체결(심사·승인 제외) 등의 교차서비스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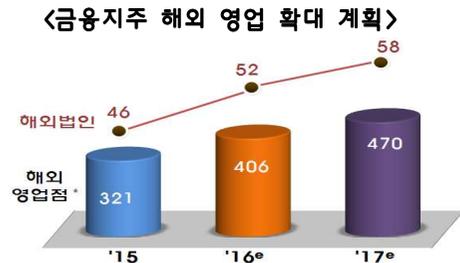
"부산·경남은행 / 광주·전북은행"은 상호 교차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'16.1월부터 교차서비스 제공 예정

(예시) ① 경남은행 고객도 부산은행 김해공항지점에서 출국 전 외화환전 가능
 ② 전북은행 고객인 개인사업자가 광주지역에서 입찰시 필요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광주은행 지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

2 해외 영업, 신사업 진출 활성화

- ①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·인력지원 규제폐지* 등에 힘입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
(해외법인 : '15년 46개 → '17년(계획) 58개, +12개)

* 계열사의 자금지원시 담보확보 의무 폐지, 해외법인에 대한 검직규제 폐지 등



* 해외법인의 해외지점('15말 282개(본점포함)) 및 국내법인의 해외지점('15말 39개)

〈'16~'17년 지역별 진출 계획〉

지역	해외법인	해외영업점*
계	12	149
동남아	8	68
중국	1	10
인도	1	55
기타	2	16

- ② 금융지주가 금융·실물융합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음이 명확해짐에 따라 신사업 투자 활성화 기대

- ① 금융지주가 핀테크 지원센터(Fintech Lab)*를 통해 발굴한 우수기술 업체에 대해 자회사 편입 등 과감한 지원이 가능

* 핀테크 혁신센터, Future's Lab, Fintech hub 등을 통해 신생 핀테크회사(Start up)를 지원 중

- ② 국·내외 부동산·선박·해외자원 등에 대한 실물투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저금리·저성장 환경하에서 수익다변화 가능

- 특히, 영업점 등 보유건물이 많은 은행의 경우 고정비용이 크고, 건물 노후화, 지점 축소 등에 따른 전문적 개발·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투자회사(REITs)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#1 D지주는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을 규제(50%이상 보유) 폐지 정책에 따라 **록셈부르크에 회사형 펀드**를 '16.1월 설립하여 해외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

* 유럽의 공모펀드 투자기준(UCITS)에 따른 펀드로, 유럽 내 27개국에서 자유롭게 판매 가능

#2 E지주는 **보유 영업점 건물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**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(REITs) 설립에 참여하여 인가절차 진행 중

3 금융지주의 경영효율성 개선

- ① 업무위탁 및 임직원 겸직 확대로 연계영업이 용이해져 활발한 이종 업종간 복합사업(자산관리부문, 기업금융부문 등) 활성화 기대

- 아울러, 계열사별 경쟁우위 부문을 그룹 전체가 활용할 수 있어 중복에 따른 비효율 제거 가능

* 은행의 전국적 판매채널 활용으로 기타 계열사의 모집인 비용 등 판매관리비 절감 가능

- ②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은행 중심으로 통합 기업신용위험평가 모델, 통합 여신감리시스템*을 구축 후 관련업무를 위탁수행하여 그룹 여신건전성을 개선

* 대출 등 거래이후 고객의 재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부실가능성을 사전 차단

2개 금융지주는 카드, 증권, 캐피탈 등 계열사의 기업신용평가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기 위한 전산개발을 진행하여 '16년 중 시행 계획

F지주는 여신감리 기능이 없는 계열사의 감리업무를 은행에 위탁 추진

- ③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완화로 위험관리 개선 및 고객수요 분석을 통한 이종 업종간 복합상품 개발 등 금융혁신이 가속화 될 전망

G지주는 금융지주와 계열사간 고객분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, 계열사 상품개발 직원간 겸직, 분석정보 공유 등으로 고객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

IV. 향후 계획

- '15.12.29일부터 개정 「금융지주법 시행령」 및 「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」을 시행

- 다만,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홈페이지 조회서비스는 '16.3.12*부터 시행

* 신용정보법(15.3. 개정)에도 반영된 사항으로 동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